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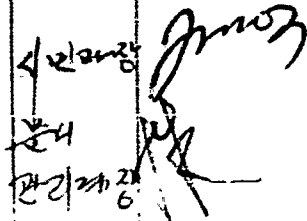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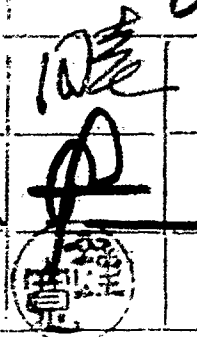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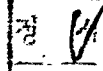



후
보

9/10
행정 60호

기안용지

문서번호	법무 181.7602 (결화번호 307)	결정사항	조항
처리기간	결재자		
사행일자	제 1 부 서 장	시	장
승인년한			
부 초 기 관	기획관리관		
	법무 과장		
	법제 계장		
기안책임자			
정 수 참 조	과	안	참 조 발 신
제 목	<p>서울특별시무허가건물 대책위원회규정중 개정</p> <p>서울특별시무허가건물양성확추진위원회와 무허가건물 대책위원회는</p> <p>그 기능이 유사하므로 금번 위원회정비계획에 따라 무허가건물양성확추진위</p> <p>원회는 이를 폐지하고 동 기능을 무허가건물 대책위원회에 통합 운용하기</p> <p>위하여 법안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p>		
관 인			
발 송			

0201-1-84

1969. 11. 10. 송인

(서울특별시법 관세 직업보도원 인서)

0409

(료 령)

서울특별시 른 령 제 호

서울특별시 무 허 가 건물 대책위원회 회 규 정 중 다음 과 같 이 개정 한다.

1972 년 9 월 10 일

서울특별시 장 양택식



서울특별시 무 허 가 건물 대책위원회 회 규 정 중 개정 규 정

서울특별시 무 허 가 건물 대책위원회 회 규 정 중 다음 과 같 이 개정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 다음 에 제4호, 제5호 및 제6호 를 다음 과 같 이 삽입 하 고 제4호 를 제7호 로 한다.

- 4. 불량 건물 개량에 관한 조사 연구 및 대책 수립
- 5. 기존 무 허 가 건물 정리 계획에 관한 사항
- 6. 무 허 가 건물 양성화 업무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규정은 1972 년 9 월 10 일 부터 시행 한다.

조 문 대 비 포

현 행 계 영

제2조 (직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무허가건물양성화에 관한 조사 연구 및 대책수립
2. 불량건물 개량에 관한 조사 연구 및 대책수립
3. 데지본양대책에 관한 조사연구 및 대책수립
4. 기박 양성화 업무에 관한 사항

제2조 (직무) 과 동

1. 과 동
2. "
3. "
4. 불량건물 개량에 관한 조사연구 및 대책수립
5. 기존무허가건물 정리계획에 관한 사항
6. 무허가건물 양성화 업무에 관한 사항
7. 기박 양성화 업무에 관한 사항

계 정 이 유

서울특별시무허가건물양성확진위원회와 무허가건물대책위원회를 그 기능이 유사하므로 금번 위원회정비계획에 따라 무허가건물양성확진위원회는 이를 폐지하고 동 기능을 무허가 건물 대책위원회에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함.

서울특별시부여가건축물양성확충위원회규정

1970. 9. 1 문명 제308호

제1조 (목적) 부여가건축물 양성과수권이 관한 효율적인 방안을 식장익익 권의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부여가건축물양성확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둔다.

제2조 (직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부여가건축물양성확충에 관한 조사연구 및 대책수립
2. 건축물계량에 관한 조사연구 및 대책수립
3. 대지분양대책에 관한 조사 연구 및 대책수립
4. 거주양성과 업무에 관한 사항

제3조 (조직) (1)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도시계획국장이 된다.

(2) 위원은 기획국장, 병무국장, 예산국장, 건축계1국장, 도시계획국장, 사외
국장, 녹지국장, 토목국장, 학수국장, 공수국장, 성소계2국장이 된다.

제4조 (분과위원회) (1)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장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건물계량분과위원회
2. 대지분양대책분과위원회

(2) 건물계량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건축계1국장 대지분양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관계국장이 된다.

(3) 분과위원회의 지정권은 위원장이 갖는다.

제5조 (집행명령서) (1) 건물외 계량지도와 계량사업에 관한 사무적인 조치를
효과적으로 기하기 위하여 건물계량집행명령을 둔다.

(2) 건물계량집행명령에 관장을 두되 관장은 건축계량계장이 된다.

(3) 건축 지방집행관은 건축 제1계장, 예산제2계장, 도로 계장 및 하수 시설 계장이 된다.

제6조 (회의) (1) 회의는 위원장과 본장이 부부 소림한다.

(2) 회의는 계장위원 또는 본원과 본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또는 본원과본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7조 (건의및보고) (1)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시장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2) 본국위원회의및 집행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관사와서기) (1) 위원회 본국위원회의및 집행단이 사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관사와 서기 약간인을 둔다.

(2) 관사와 서기는 시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9조 (시행세칙)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70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개 정 공 포 안

서울특별시 부역가 건물 대책 위원회 규정 중 개정 규정을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청

1972 . 8 . ,

서울특별시 훈령 제 309 호 70.9.1

서울특별시 부역가 건물 대책위원회의 규정중 개정 제 2조 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 (직무) 1)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 한다.

가. 부역가 건물의 집단 침거에 관한 사항

나. 침거민^{의주및}의 정착 대책에 관한 사항

다. 침거민 구호에 관한 사항

라. 불합리한 개량에 관한 조사 연구 및 대책 수립

마. 기존 부역가 건물 정비 계획에 관한 사항

바. 기타 양성과 업무 및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부칙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칙 시행한다.

조선학 조문 대비표

개 정 전	개 정 후
제2조 (직무) 1)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 한다.	제2조 (직무) 1)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 한다.
가. 무학가 건축물의 철거 관리에 관한 사항	가. 무학가건물의 집단체적에 관한 사항
나. 집거민의 정착대책에 관한 사항	나. 집거민의 이주 및 정착 대책에 관한 사항
다. 일거리구호에 관한 사항	다. 집거민 구호에 관한 사항
라. 기학 위원회의 조직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라. 불쌍년등 개방에 관한 사항 조사연구 및 대책 수립
	마. 기존 무학가 건물 정리 계획에 관한 사항
	바. 기학 양성관 업무 및 위원회의 조직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서 울 목 영 시

법부 181.

72.

수신 수신서참조

계목 공로 통지

아래와 같이 공로하였으므로 통지함.

번호	공로 년월일	건명
		나동출반의 무허가 건물 대책 추진회 유닛중 개량

첨부: 본령 문 1 부 끝.

(이 내용에 관한 시행문은 따로 보내지 않음)

서 울 목 영 시 장

수신처: 서심 1-4, 서국 1-11, 서과 1-58, 서청 1-9, 서울 1-98,

과동, 전소속기관

개 정 사 유

서울특별시 부속기관인 다산 위원회와 양성과 추진 위원회는 부속기관으로서
다른 유사한 직무를 분장하고 있는 각 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양성과 추진위원
회를 폐지 하므로써 서울특별시 부속기관인 다산 위원회 및 양성과 추진위원
회와 같은 조항 개정 합니다.

9. 순회 규정 전문

70.9.1 훈장 제131호

제1조 (목적) 부커가 건축물의 종합적인 설계대책을 심의하여 그 효율적인 시공 방안을 시장에게 건의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부커가 건축물 건설위원회를 (이하 위원회라 한다) 둔다.

제2조 (직무) 1)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 한다.

- 1. 부커가 건축물의 설계계획에 관한 사항
- 2. 설계면의 정산대책에 관한 사항
- 3. 설계면 구조에 관한 사항
- 4. 기타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조직) 1. 위원회의 위원장을 두되 도시계획국장이 된다.

- 2. 위원은 기획과장·예산과장·관리과장·건축 제1·2과장·사회과장·보건제1과장·관리제2과장·문화제1과장·시정과장이 된다.

제4조 (조직과 성의) 1. 위원회의는 위원장이 초빙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회의는 위원과 찬수의 총칙으로 개의하고 총칙 위원과 찬수의 찬성의 한다.

제5조 (건의)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은 시장에게 건의 하여야 한다.

제6조 (훈사와 서기) 10.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하기 위하여 훈사와 서기를 둔다

- 1) 훈사는 건축 지방과장이 되고 서기는 건축 제1과 과장중에서 서장이

제7조 (특별시) 위원회는 본안이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이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70년 8월 1일 부칙 시행 한다.

서울특별시 부지가 건축물 양성과 추진위원회의 규정

제1조 (목적) 부지가 건축물 양성과 추진에 관한 종합적인 방안을 시장에게 건의하
70. 7. 1 준경 11301
위하여 서울특별시 부지가 건축물 양성과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제2조 (직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 한다

1. 부지가 건축물 양성과에 관한 조사 연구 및 대책 수립
2. 종합건축물 개발에 관한 조사 및 연구 대책 수립
3. 택지분양 대책에 관한 조사 연구 및 대책 수립
4. 기타 양성과 업무에 관한 사항

제3조 (조직) 1)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도시계획국장이 된다.

2) 위원회는 기획과장. 법무과장. 예산과장. 건축 제1과장. 도시계획과장

사회과장. 녹지과장. 토목과장. 하수과장. 급수과장. 청소 제2과장이

제4조 (준과위원회) 1)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장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위원회를 둔다.

1. 건축물 개발준과 위원회

2. **대지분양 대책 본과 위원회'**

- 2) **건물 개발본과 위원회 위원장은 건축 제1과장 대지분양 대책위원회 위원장
은 준지 과장이 된다.**
- 3) **본과 위원회 부장은 위원장이 된다.**

제5조 (**집행 본 실시**) 1) **건물의 개발지도와 개발사업에 관한 사무적인 조치를
효과적으로 처리 하기 위하여 건물 개발본을 둔다.**

2) **건축 개발 집행본에 본장을 두되 본장은 건축 개발과장이 된다.**

3) **건축 개발 집행 본장은 건축 제1과장, 예산 제2과장, 도모 제과 및 야수시정
과장이 된다.**

제6조 (**회의**) 1) **회의는 위원장과 본장이 각각 소집한다.**

2) **회의는 자의위원 또는 본원과 본수의 총석으로 개최하고 총석위원 또는
본원과 본수의 찬성으로 결정 한다.**

제7조 (**건의 및 보고**) 1)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시장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2) **본과 위원회 및 집행본에서 결정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훈사와 서기**) 1) **위원회의 본과위원회의 및 집행본이 사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훈사와 서기 직책을 둔다.**

제9조 (**시정세칙**) **위원회의 운영에관하여 중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